

FTA 원산지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FTA Origi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진병진(Byung-Jin Jin)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목 차

I. 서론	V. 결론
II. 선행연구 검토	참고문헌
III. FTA 원산지정보 유통·관리 현황	ABSTRACT
IV. FTA 원산지정보 유통·관리 개선방안	

국문초록

한-칠레 FTA발효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국내거래단계에서의 원산지 정보 유통과 관리는 FTA활용 이익의 수출자 편향성과 발급유인 부족 등의 원인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발급·유통되고 있는 원산지증빙서류의 경우에도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최종 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과 유통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과 유통되는 국내거래단계 원산지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FTA활용 지원을 위해 국내적 영역에서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유통 활성화와 오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최종 수출자의 의도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손실방지책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원산지확인서, 인증제도, 원산지증명위험, 수출보험

I. 서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FTA추진정책은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불과 11년이 경과한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중국, 미국, EU와의 FTA를 포함하여 14개 협정 51개국과의 FTA를 발효시킴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FTA체결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은 기업들이 교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주는 것에 불과하며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기업들의 FTA특혜활용이 즉시 가능해지거나 체결국과의 교역이 저절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¹⁾

이는 FTA활용을 위한 기본적 요건이 정확한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흐름과 이를 활용한 협정별 원산지판정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에 기인한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FTA활용과정에서 협정별로 다른 원산지규정과 절차로 인해 정확한 원산지판정과 관리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FTA특혜 활용을 위한 원산지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내용에 대한 정확성의 확인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FTA특혜 적용물품의 원재료 수급단계부터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원산지정보의 유통흐름 상 원부자재의 국내 공급자가 최종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자료로 제공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²⁾는 원산지정보 유통의 출발점에도 동 서류의 유통과 관리를 위한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동 서류의 제공자인 국내 공급자에게 FTA활용 이익이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류 제공을 위한 원산지관리 비용과 책임만 부담되고 있기 때문이며, 발급·유통되고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경우에도 국내 공급자의 원산지관리 능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그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판정에 근거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원활한 발급·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FTA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FTA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분석이나 전체 산업 또는 특정산업에 대한 FTA의 경제적 효

1) 배명렬·박천일, “한국 무역업계의 FTA평가와 활용 제고방안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6권제5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년 12월 27일, p.250.

2)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가 국내산인지 역외산인지 판단하여 관련 서식에 의거 작성하는 서류로, 2008년 미국의 제조자보증서(Manufacture Affidavit)제도와 EU의 공급자 확인서(Supplier's Declaration)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료 및 최종 제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절차를 마련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 입증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원산지증명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원산지증빙서류이다.

과 분석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실제 FTA 활용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분석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특히 국내 거래단계에서의 원산지정보 유통과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FTA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국내 거래단계에서의 원산지정보 관리와 유통체계가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거래단계에서의 원산지정보의 정확한 관리와 유통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봄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제도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FTA와 관련하여 국내거래단계에서의 원산지정보 유통 활성화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중 일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제시되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재완(2013)은 “FTA 활용도 향상을 위한 당면 정책과제의 연구”에서 FTA 활용 업체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원자재 공급업체와 구매업체 간에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원산지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고 있고, 유통되고 있는 원산지정보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부족으로 인해 정확성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정인교(2010) 등은 “FTA 활용 활성화방안 연구”에서 우리 기업들은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보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원산지증빙자료 보관의무에 대한 부담, FTA 활용 전문가 부족, 협력기업의 원가정보 제공 기피, 원산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하여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부재 등을 FTA 활용의 제약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배명렬(2014) 등은 “한국 무역업계의 FTA 평가와 활용 제고방안 연구”를 통해 원산지규정 및 절차의 정비, 정보제공 방법의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 FTA 협상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우리 무역업계의 FTA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원산지정보원(2011)은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을 위한 선진사례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에서 중소기업들이 상위 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제공 요구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는데, 동 연구에 따르면 원산지정보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원산지정보 지원조직의 미비 및 원산지관리 전담인

력 미확보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조규찬(2011)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컨설팅 과제에 관한 연구”에서 수출 중소기업을 토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원산지기준의 복잡성, 까다로운 원산지증빙서류의 발급절차, 거래처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비협조, 전문인력 부족 등이 기업의 원산지증명에 불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박철구(2013) 등은 “원산지관리역량 및 FTA활용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이 미진한 원인이 기업들의 원산지관리 역량 부족과 원산지정보 유통수준의 미비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재승(2013) 등은 “무역기업의 FTA활용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FTA활용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교육기회 확대와 FTA활용 컨설팅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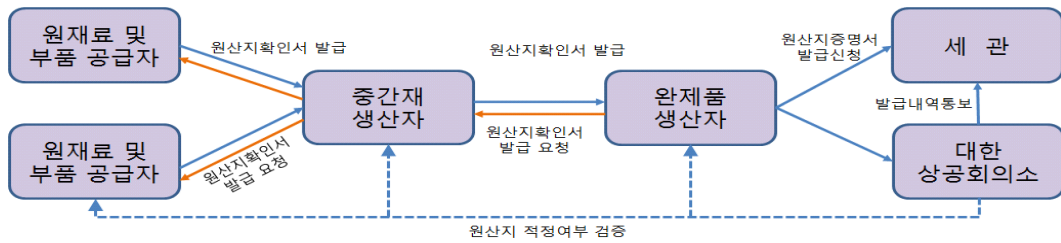
손판도(2015) 등은 “FTA 관세혜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정보 관리 전략”에서 FTA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원산지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 방안으로 원산지정보 관리시스템의 보급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Ⅲ. FTA 원산지정보 유통·관리 현황

1. 원산지정보 유통 현황

1) 원산지정보 유통 흐름

FTA특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는 수출자가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조달하여 생산에 투입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국내 조달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입수가 필수적이다. 즉, 국내 거래단계에서의 원산지정보 관리는 국내 공급자가 최종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각 거래단계별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과 유통이 제약 없이 원활히 수행되어야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발급·유통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내용 또한 오류가 없이 발급되어 최종 수출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림 1> 국내거래단계 원산지정보 유통경로

자료 : 관세청

2) 원산지정보 유통 저해 요인

원산지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이 강제화 되어 있지 않고 발급사실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어 정확한 발급기업의 수나 유통건수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종 수출물품의 구성품 중 상당 부분이 국내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매되어 제조·가공에 사용되어 지고 있고,³⁾ 이 경우 필수적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제공되어야 함으로 FTA활용 수출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 수 추정을 통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 수를 추산해 보면 약 13,500여개 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국내거래단계에서 국내 공급자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및 유통에 적극성을 보이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FTA활용을 위한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①발급에 따른 혜택 부재, ②원가 및 제조공정 등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 ③원산지검증 과정에서의 소명에 대한 부담, ④국내 공급자의 원천적 원산지관리 능력 부족, ⑤발급을 위한 관리비용 발생 등의 원인에 기인한다.

<표 1>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기업 수 추정

<p>122,080개사(A) × 0.63(B) × 0.65(C) × 0.54(D) × 0.5(E) = 약 13,498개사</p> <p>A. 통계청 발표 2013년말 기준 중소제조업체 수 B. 한국은행 발표 국내 재화생산 과정에서의 중간투입률 C. FTA체결국과의 교역비중(51개국 기준) D. FTA 평균 활용률(2015년 HS 21개부 FTA활용률 단순 평균) E. 협력업체 원산지관리비율(50% 수준으로 가정)</p>
--

3) 정계완(2010)의 연구에 따르면 대기업은 약 12%, 중소기업의 약 8% 내외의 원재료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공급자 측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원산지(포괄)확인서 유통과 관련된 현행 법제에서도 발급·유통이 원활화되지 않는 원인이 존재한다. 현행 FTA관세특례법에서는 최종 수출자가 필요할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을 생산자에게 요청하고 생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발급거부 등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고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또한 강제성이 없어 원활한 발급과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2. 원산지정보 관리 현황

1) 원산지정보 발급·유통 장려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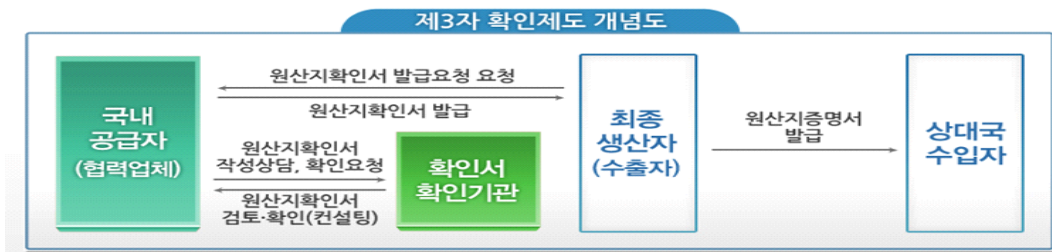
FTA활용을 위한 출발점이자 국내거래단계에서의 핵심 원산지정보인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과 유통은 제도적으로 강제된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관세당국 및 FTA활용지원 기관에서도 현재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을 장려하거나 발급실적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2013년도까지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기업에게 발급유인 제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⁴⁾에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출재화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건당 1만원씩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장려책이 운영되었으나 2014년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는 이마저도 폐지되었다.

2) 원산지정보 신뢰성 관리제도

발급·유통 활성화를 위한 장려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 반면 유통되는 국내거래단계 원산지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제도는 2013년부터 관세청 및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부 운영되고 있는데, 동 제도는 국내공급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유통·발급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에 따른 부담완화와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하거나 정확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이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12



〈그림 2〉 원산지(포괄)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운영개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이 외에도 정부기관이나 지원조직에 의해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아니나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관세사를 통해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거나 원산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1)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부담 해소를 위해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는 2013년 11월부터 서울세관에서 시범운영해 오던 것을 2014년 2월부터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세관 등 전국 6개 세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이 FTA에 따른 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세관장이 심사·확인하고 수출자는 세관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받아 수출물품 원산지판정에 활용함으로써 ‘한국산 물품’의 FTA특혜수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관장이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정확성을 인정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 확인번호를 부여하고 ‘FTA 포괄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시스템’에 심사결과를 등록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함으로써 공신력을 높여주고 있다.⁵⁾

관세청은 당초 동 제도의 시행을 통해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대외적 신뢰성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불식과 원산지증빙 부담 제거로 기업의 FTA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⁶⁾ 홍보부족과 기업들이 세무당국에 원가자료 등을 제공하는데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활성화에는 한계가 도출되고 있다.

5) 정재호, “FTA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와 관세사의 역할”, 『계간 관세사』, 한국관세사회, 2014년 봄호, p.82.

6) 관세청 보도자료, 『영세협력업체 FTA 원산지부담 세관에서 해결한다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전국 확대 실시』, 2014년 1월 28일.

(2)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전국 17개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 권역별 FTA활용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부담완화를 위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2013년 8월 경기도 FTA활용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국내 공급자가 발급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정확성을 확인하여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HS코드, 협정별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s) 충족 여부를 자재명세서(BOM : Bills Of Materials)·원가산출내역서·제조공정도 등과 비교하여 이상이 없으면 ‘원산지 확인결과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동 제도의 신청주체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기업규모 등 별도의 제약은 없으나, 신청대상은 협력사가 기존에 발급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신뢰성에 대해 원청업체가 추가 증빙자료 및 의문을 제기하여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자체적으로 발급한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최종 활용자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업(수출자)은 신청이 불가능해 제도 활용의 수요자 중 일방에게만 활용혜택이 주어지는 문제가 있으며,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어 ‘원산지 확인결과서’가 발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 원산지검증단계에서는 별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다시 원산지증빙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등 확인에 대한 실제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수요자의 비용부담이 없이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약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2015년의 경우 확인실적이 618건에 불과 하는 등 극히 일부에 대한 확인과 지원이 가능해 국가 전체의 국내거래단계 원산지정보의 신뢰성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2〉 FTA활용지원센터 지원실적 현황

상담소계 : 34,521			컨설팅 소계 : 3,077					합계
FTA 1380	지역 센터	차이나 데스크	찾아가는 FTA서비스	FTA 종합 컨설팅		지역 센터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OKFTA 컨설팅	영세기업 원산지관리			
19,856	9,432	5,233	1,851	277	76	255	618	37,598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발효 이후 차이나데스크 상담동향 및 대응방안』, 2016.2.3., p.8.

(3) 원산지증빙서류 전문가 작성 대행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고 있지 않으나 일부 관세사들이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정확한 발급을 위해 기업들의 위탁을 받아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을 대행하여 주거나 원산지관리를 대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관세사회에서는 일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산지증빙서류 전문가 작성 대행을 공식적 영역으로 확대하여 원산지 관리체계를 안정화하고 원산지증빙서류의 흐름을 원활화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⁷⁾ 원산지증빙서류 전문가 작성 대행이 공식적 제도로 운영될 경우 중소기업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로 지속 가능한 원산지관리체도가 정착되게 됨으로써 FTA활용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원산지정보 유통·관리 현황의 문제점

1) 원산지정보 발급·유통 장려제도의 문제점

수출기업들의 FTA활용을 위해서는 국내거래단계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원활하게 발급되고 유통되는 것이 필수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공급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에 따른 혜택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원산지관리에 따른 비용과 원산지검증 과정에서의 소명에 대한 책임만 부과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2) 원산지정보 신뢰성 관리제도의 문제점

현재 관세청 등이 실시하고 있는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등은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는 별개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확인(검토) 내용에 대한 책임성 문제이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의 확인내용에 대한 피확인자의 무조건적 신뢰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자인 국내 공급자와 당해 서류의 최종 활용자인 수출자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최종 수출자는 국내 공급자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세관장 등 제3자로부터 확인받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서류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확인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문제를 발생시켜 이를 근거로 발급한 원산

7) 김중근, “FTA 활용과 관세사의 역할”, 2014년 국제원산지컨퍼런스 발표원고, p.14.

지증명서가 오류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 특혜관세 취소 등의 손실을 입은 수입자는 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수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해결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제3자에게 확인받은 서류에 대한 신뢰로 인해 최종 수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확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명확한 보상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현행 『관세사법』 제16조에서 관세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의뢰인의 손실을 배상하기 위해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7조의5에서도 관세사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지급준비금의 적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비해 적어 충분한 보상책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제3자에게 확인받은 서류의 오류로 인한 수출자의 손실과 마찬가지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자인 국내공급자에게도 확인받은 서류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손실과 이에 대한 보상 문제는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 공급자 또한 최종 수출자와 같이 전문성을 가진 제3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정확성을 확인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신뢰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서류를 제공하게 되므로 문제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이 확인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나, 현행 제도에서는 확인자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거나 책임의 부과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비밀자료에 대한 보안성 문제이다.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의 확인과정에서 원가·제조공정 등 『FTA관세특례법』 제20조에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동으로 비밀취급자료로 지정되도록 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기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제외하고는 동 법규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비밀 자료의 확인 후 해당 자료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보안대책이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기업비밀의 보호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현재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는 동 제도의 효용성과 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순수 민간 간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해 언제

까지 정부의 예산이 확보되어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고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갑자기 제도운영이 중지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어 기업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 지속적인 민간컨설팅 시장의 양성 필요성 문제이다.

원산지(포괄)확인서 등과 같은 원산지증빙서류의 원활한 유통과 오류 예방은 국가적 FTA 이행체계의 확립이라는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순수 민간 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FTA 및 관세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전문가가 컨설팅 등을 통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정부예산이 집중 투자되어 운영됨으로써 민간 FTA활용컨설팅 시장이 양성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IV. FTA 원산지정보 유통 · 관리 개선방안

1. 원산지정보 유통 활성화 방안

1) 발급 장려규정 신설

현행 법제에서는 최종 수출자가 필요할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을 생산자에게 요청하고 생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발급거부 등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고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또한 강제성이 없어 원활한 발급과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FTA관세특례법』등 현행 법령에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명문화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대상 기업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을 강제화하기 위한 ‘법정의무화’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협력업체의 부담만 가중시켜 다수의 범법기업만 양산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특히 개별 FTA협정문에서 ‘어떠한 당사국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또는 전자증명을 다른 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⁸⁾고 규정되어 있는 등 발급의무를 법규로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8) 한-미 FTA협정문 제6.15조

2) 협력사 원산지관리 지원

원산지증명절차상 최종적인 수혜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이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공급받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출하는 기업 또한 수입자가 얻게 되는 FTA특혜관세가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작용을 하게 되어 수출이 용이해 진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수혜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기업의 경우 직간접적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발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담자 채용 등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을 꺼리게 되어 원산지증빙서류의 원활한 유통이 제약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FTA특혜관세의 수혜자인 수출기업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기업에 대해 원산지관리 교육을 지원하거나 전산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발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3) 전자적 유통체계 구축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원활하게 유통되고 있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현재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은 다양한 반면,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전자문서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종 시스템 간 전자적 방식의 서류유통이 원활화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따라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전자표준을 제정하여 개별 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 간에 전자적 방식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유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3〉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현황

개발자		시스템	내용
정부(관세청)		FTA-PASS	http://www.origin.or.kr
자체 시스템 구축			현대차, 삼성전자, GM 등 외국산 Rule Engine 탑재
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OCS	http://www.pwc.com/kr/ko
	삼정KPMG	K-Origin	시스템 판매가 : 3~10억원 http://www.kpmg.com/kr
	딜로이트 안진	Benit	네덜란드 솔루션 도입 http://www.deloitteanjin.co.kr
	The ITC	GTS	S&T대우(주)

개발자		시스템	내용
관세법인	에이원 관세법인	FTA-HUB	
	이정 관세법인	OTS	(주)대우일렉트로닉스 작업
	CTL 관세법인		글로벌비즈(주)
ERP 기업	SAP	GTS	http://www.sap.com/korea
	인텔 · 오라클 · 에코클라우드 · SK 텔레콤	FTA Insight	SaaS형 플랫폼 기반의 하드웨어와 솔루션의 일체형 http://www.ecocloud.co.kr
	영림원소프트랩	K-FTA	원풍 · LG생명과학에 공급
	· LG히다찌		http://www.lghitachi.co.kr
IT 기업	KTNET	FTA Korea	https://www.utradehub.or.kr
	비즈머스	Wise FTA	http://www.bizmerce.com
	엠로(EMRO)	FTA 원산지 정보관리시스템	현대위아의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수행
	레디코리아	FTA OMS	http://www.readykorea.co.kr
	매트릭스투비	Matrix-FTA	http://www.matrix2b.com
	엠투엠글로벌	M2M-FTA	http://www.m2mglobal.co.kr
	비즈리더그룹	OASIS	http://www.blgroup.co.kr
	유비포럼		http://www.ubiforum.co.kr
	국제원산지정보원 · 클레이웍스	FTA-HUB K-FOP	중견기업용 중소기업용, 서버일체형
KS 솔루션	원산지관리 솔루션		

자료 : 필자 정리

4) 세제상 인센티브 혜택 부여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혜택으로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零)세율을 적용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 방안은 『대외무역법』규정⁹⁾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영(零)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벤치마킹하여 도입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발급되어 수출자에게 제공되는 물품은 기본적으로 FTA를 활용한 수출에 사용되어 질 물품이며,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확인서 발급 물품의 경우에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제한되어 있어 그 기본성격 상 동일하므로 이들 물품에 적용되는 세제상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신설할 경우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물품이 수출에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출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9) 대외무역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2. 원산지정보 관리체계 개선 방안

1)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증제도 도입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는 공통적으로 전문지식을 지닌 자가 기업이 발급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그 정확성을 단순히 검토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내용의 정확성 확인은 가능하나 가격정보 등 기업비밀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과 확인자 간에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내용 확인만 진행되게 되어 대외적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¹⁰⁾

따라서 원산지(포괄)확인서 확인 결과에 대한 대외적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 혹은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확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인증(Certification)¹¹⁾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인증절차가 진행되게 되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기업의 기업비밀을 보호하면서 발급된 원산지(포괄)확인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일정한 프로세스 하에 인증과정이 진행되게 됨으로써 FTA의 효율적 추진과 집행을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분야의 대외적 신인도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산지확인서 인증제도의 도입방안과 관련해서는 『FTA관세특례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공적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임의인증제도’¹²⁾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인증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원가자료 등 기업비밀의 세무당국 제출을 기피하는 기업의 심리를 반영하여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구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행 『FTA관세특례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령에 제도도입 근거규정 및 운영규정을 마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인증제도 자체가 규제수단이 아니라 지원제도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한 실시와 보완이 용이하도록

10) FTA활용지원센터의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는 ‘확인결과서’가 발급되나 이 자체가 공신력을 갖춘 서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11)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로서,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현행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적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법적인증제도는 다시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세분되는데 법적강제인증제도는 공공보건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강하고 최종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일 경우 활용되며 법적임의인증제도는 환경보호 등과 같이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법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인증제도이다.

법령화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연성이 확보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 운영에 있어 FTA활용지원과 관련한 관세사 등 민간시장과의 협업이 가능한 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관세사 등 FTA 및 관세행정 전문성을 갖춘 자가 기업의 의뢰를 받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였거나 그 정확성을 확인한 경우 간편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컨설팅 시장의 활성화와 FTA이행체계의 확립이라는 공공적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4〉 원산지확인서 인증제도 기본 도입방향

구 분	내 용
제 도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임의인증제도 - 『FTA관세특례법』에 법적 근거규정 마련 필요
인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및 물품을 불문하고 FTA특혜수출에 사용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발행된 모든 원산지(포괄)확인서 중 인증취득의 의사표시가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방법 및 내용의 적합성
인증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입 초기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방법 및 내용으로 한정 제도 안정화 이후 신청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발전
인증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기관 : 중앙정부(관세청) 인증기관 : FTA 및 원산지 관련 전문기관
인 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수준 :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적격성 확보 유무에 대한 판단 인증기간 : 심사대상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활용기간 인증비용 : 인증기관이 인증심사과정에 투입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실비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증명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3자 보증제도 도입방안』, 2012년 12월, p.91.

원산지확인서 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의 운영효과인 원산지증명 과정의 병목현상 개선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국가적인 FTA활용체계 확립이라는 공공성이 유지되면서도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낮아지게 되어 FTA활용 지원 등에 대한 민간시장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다.

이는 정확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유통을 가능하게 하여 안정화된 FTA활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FTA경제영토에서 우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하는 국가의 정책적 목표달성이라는 공공성은 유지되면서도, 민간기업 간의 거래관계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직접 관여하는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게 되어 민간시장의 자율성과 FTA지원컨설팅 등 민간전문시장

의 활성화가 도모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확인 및 인증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비밀을 국가기관(관세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 취급 및 보관하게 되어 기업비밀 유지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고 과세당국이나 거래기업에 기업비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부담이 제거되게 되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기업의 편의가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행정력 경감 및 경제적 이익의 발생도 기대할 수 있다.

원산지확인서 인증제도는 우리 기업의 원산지관리상 오류의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여 원산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방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국의 FTA원산지관리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상승시켜 수출 증대와 추가적 FTA협상의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원산지검증 요청을 FTA원산지관리체계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경감시킬 수 있어 원산지검증 수행 시 소요되는 행정비용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에 관한 사전적 관리가 가능해져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부분 차단되게 됨으로써 원산지위반에 따른 향후 거래의 단절이나 수입자 손실에 대한 보상책임을 방지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2) FTA특혜원산지증명 무역보험제도 도입

무역거래는 기본적으로 상거래라는 측면에서는 국내거래와 차이가 없으나, 무역계약의 체결에서부터 물품의 인도와 대금결제까지 국내거래에 비하여 거리가 멀고 거래당사자 간의 긴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비해 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¹³⁾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장기수출보험 등 13개 보험제도, 2개의 보증제도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¹⁴⁾

무역보험제도의 역할 및 기능은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금융 공급확대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향상·수출진흥 정책수단·시장지향적 무역관리 및 산업정책 수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¹⁵⁾ FTA특혜를 활용한 무역거래의 경우에도 일반 무역거래에 비해 협정에서 정하고 있

13) A.G.Guest, et al., Benjamin's Sale of Goods, 4th ed., Sweet&Maxwell, 1992, p.917.

14) 정재완, "FTA 이행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 보완방안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제13권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2년 12월, p.73.

는 원산지규정과 절차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위험발생의 원인이나 보험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수출보험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FTA를 활용한 수출은 각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정확한 내용에 근거한 원산지증명서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원산지증명서가 오류 없이 발행되기 위해서는 국내 거래단계에서 각 거래단계에 관여하는 기업들이 원산지관리능력을 구비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원산지증명의 중간 증빙서류 작성 및 발급이 가능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많은 수의 국내 공급자들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원산지증빙서류의 제공에도 적극적이지 않은데, 특히 국내 공급자의 원산지관리능력 부족으로 인해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같은 중간 단계에서의 원산지증빙서류가 오류를 발생시킬 경우 최종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또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있다.¹⁶⁾

이는 최종 수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특혜관세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수입자와의 관계악화, 특혜관세 취소분에 대한 배상책임의 발생, 수출자의 신뢰도 저하, 지속적인 수출거래의 중단 위험 등에 선의의 수출자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출보험제도에는 이러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수출자들의 FTA활용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산지(포괄)확인서 오류 등 수출자의 의도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FTA특혜원산지증명서 위험을 부보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수출자가 FTA활용 수출에 적극성을 갖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FTA특혜원산지증명서 무역보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적용범위는 제도의 발전성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최초 도입시기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을 취득한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제조·가공된 물품을 대상으로 발행된 FTA특혜원산지증명서 위험을 부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의 안정화 이후 전체 FTA특혜원산지증명서로 제도 적용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증제도를 활용해 인증을 취득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근거로 제조된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고발생의 위험이 저감되기 때문이기도 하

15) 윤상철, “수출신용보험의 제도적 개선과 신성장동력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제10권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년 3월, pp.50~51.

16) 국제원산지정보원이 2012년 국내공급자 263개사, 최종 수출자 265개사를 대상으로 원산지관리 실태와 FTA활용상의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공급자의 경우 응답기업의 28.2%인 74개사가 원산지확인서의 정확한 발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최종수출자의 17.7%인 47개사가 국내공급자가 제공한 원산지확인서의 내용에 불신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지만, 인증 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오류에 대한 보상책으로서의 의미도 동시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FTA특혜원산지증명서 무역보험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국내 공급자는 물론 최종 수출자까지 제3자 확인을 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신뢰 수준이 향상되게 되어 국내적 차원에서의 원산지증빙 서류 유통 흐름 원활화에 절대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혜관세 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해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수출자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수출자의 의도하지 않은 피해예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들의 FTA활용 수출 가능성 증진은 물론 활용 안정성도 증대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수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발생한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인해 수입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수출자 책임의 발생여부와는 상관없이 수입자가 당해 수출자와의 거래관계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FTA활용 수출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넷째, 수출시 선제적으로 수입자에게 수출자 자신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인해 수입자가 특혜관세 취소 등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 줄 것임을 약속하는 보증을 제공할 수 있어 경쟁국 기업에 비해 보다 차별화된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V. 결론

수출기업의 FTA활용을 위해서는 국내거래단계에서 원산지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정확한 정보의 관리가 필수적이나 FTA활용 경험이 미국 및 EU 등 FTA선협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기업들(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증명과 관리능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비용과 책임부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원산지정보의 발급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한 국내적 원산지증빙서류 유통단계에서의 병목현상과 오류발생의 문제는 FTA활용률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활용과정에서도 최종 수출자의 의도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체약국 수입자의 특혜관세 취소를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내

공급자 및 최종 수출자의 금전적 손실 발생과 신뢰도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FTA 활용 지원을 위해 국내적 영역에서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유통 활성화와 오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최종 수출자의 의도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손실방지책의 도입 필요성과 그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유통을 위해서는 『FTA관세특례법』상에 발급 장려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전자적 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원산지정보 유통 효율성 개선, 협력사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FTA 상생 활용체계 구축,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제상 혜택 부여 등을 통해 국내거래단계에서의 원산지정보의 원활한 발급과 유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통되는 원산지정보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원산지관리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공급자들의 상황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에게 의해 확인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까지를 감안하여 원산지확인서 인증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최종 수출자의 의도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손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한 FTA특혜원산지증명서 무역보험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중근, “FTA 활용과 관세사의 역할”, 『2014년 국제원산지컨퍼런스』 발표원고, 2014년 11월.
- 국제원산지정보원,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을 위한 선진사례 수집·분석』, 2011년 12월.
- _____, 『원산지증명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3자 보증제도 도입방안』, 2012년 12월.
- 관계부처합동, “원산지확인서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제10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 안건 12-10-1, 2012년 6월 20일.
- 관계부처합동,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제29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안건, 2012년 7월 13일.
- 관세청 보도자료, 『영세협력업체 FTA 원산지부담 세관에서 해결한다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 전국 확대 실시』 2014년 1월 28일.
- 박세훈, “수출대금결제에서 신용위험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년.
- 박철구·최장우, “원산지관리역량 및 FTA 활용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관세학회지』 제14권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3년 2월.

배명렬·박천일, “한국 무역업계의 FTA 평가와 활용 제고방안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6권 제5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발효 이후 차이나데스크 상담동향 및 대응방안』, 2016년 2월 3일.
손관도·정성엽, “FTA 관세혜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정보 관리 전략”, 『산업경제연구』 제28권제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년 4월.

송채현 외 3인, 『무역보험론』, 삼영사, 2009년.

윤상철, “수출신용보험의 제도적 개선과 신성장동력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0권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년 3월.

이희숙, “한국 수출기업의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년.

정인교·조정란·권경덕·김도훈·오동윤, 『FTA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년.

정재승·정윤세, “무역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5권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년 12월.

정재완, “FTA 활용도 향상을 위한 당면 정책과제의 연구”, 『조세연구』 제13권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년 8월.

_____, 『적정한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행정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년.

정재호, “FTA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와 관세사의 역할”, 『계간 관세사』, 한국관세사회, 2014년.

조규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컨설팅 과제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컨설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년.

관세사법

대외무역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A.G. Guest, et al., Benjamin's Sale of Goods, 4th ed., Sweet&Maxwell, 1992.

Marulanda De Garica, B., “National Guarantee Fund of Colombia”, The Financier-Analysis of Capital and Money Market Transactions, Vol.4, No.1&2, February/May, 1997.

ABSTRACT

The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FTA Origi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yung-Jin Jin

There has not been enough distribution of documentary evidence of origin at the stage of domestic transaction yet due to the exporter bias of interest in utilizing FTA and shortage of attracting their issues, etc. although about more ten years has passed since Korea-Chile FTA was running.

Furthermore, in case of issued and distributed documentary evidence of origin, the accuracy was doubt, so it contains various problems like errors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final exporter.

Accordingly,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limitations of 'declaration of origin third party confirmation system' operated in order to solve problems of lacking the management ability of origin place of the domestic supplier and improve the accuracy of certificate of origin (comprehensive), and to investigate a method of improvement.

To achieve this,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y plans for distribution activation and error prevention on the declaration of origin and introduction plan of loss prevention plan due to the errors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that the final exporter did not intend in the domestic areas in order to support the use of FTA smoothly for our enterprises.

Key Words : declaration of origin, certification system, certification of origin risk, export insurance